2022년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발전 유공 포상 계획

- 오퍼스이앤씨 경영기획팀 배미아 팀장(02-2055-2023)

1 목적

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는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지원 전문인력 발굴 및 포상을 통한 창업 의욕 고취 및 1인 창조기업 발 전 도모

2 개요

- o (주 최)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
- (주 관) 서울권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공동(11개^{*})
- * 주관기관(11개 기관)

㈜더이노베이터, 서울마포구, 서울성북구,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, ㈜오퍼스이앤씨, ㈜오피스허브, ㈜중원게임즈, ㈜코너스톤웍스, ㈜하우투비즈, (사)한국여성벤처협회, ㈜한성케이에스콘

- ㅇ (휴격 및 규모)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4점
- (시상일정)
 - 일자 : '22년 11월 1일(화) 서울권 입주기업 성과발표회 행사 시 시상
 - 장소 : 미정
 - * 시상일정 및 장소는 향후 최종 수상자 대상으로 개별안내 예정

3 포상대상

o (입주기업)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아래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1인 창조기업

〈포상추천대상자〉

구분	최소자격기준		
우수기업(3)	• 서울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(행사 공고일 이전 기준)		

 (지원인력) 1인창조기업 발굴 및 지원 등 창업 활성화와 창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아래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담인력

〈포상추천대상자〉

구분	최소자격기준
지원인력(1)	센터장, 총괄매니저 및 행정매니저 중 센터 근무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자 최근 2개년 최종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센터에 소속된 자

4 포상심사

- (공고일)
 - 일자 : 2022. 10. 05(수)
 - 거젂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과 함께 발송
- **(신청기간)** 2022. 10. 05(월) ~ 10. 14(금) 15시까지
- (신청서류) 오퍼스이앤씨 홈페이지(http://www.opusbiz.kr/)에서 다운로드
 - **입주기업** : 추천서, 포상신청서, 포상 동의 및 확인서, (해당 시 추후요청 예정), 항목별 증빙서류 각 1부
 - **지원인력** : 포상신청서, 포상 동의 및 확인서(해당시 추후 요청 예정), 재직증명서 각 1부
- o (접수방법) 이메일(opusenc@naver.com) 접수
 - * 센터별 입주기업 2기업, 지원인력 1명 이내로 추천 요망
- **(문의처) 배미아** 매니저(02-2055-2023)

5 선정 절차

- (기본요건 심사)
 - 정부포상 지침상 추천제한 해당 여부 및 신청자격 보유 등 기본 요건에 대한 심사 실시
 - 기본요건 적·부 심사항목 중 "부"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

◆ 주의사항 ◆

○ 포상 신청자(기관)은 당사자 본인 스스로 [붙임1]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하며, 미신고시 포상 취소 가능

○ (서면 종합심사)

- 창업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"공적 심의위원회"를 개최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종합 심사 실시

○ (포상대상자 확정)

- 종합심사 후 최종순위표 및 추천명부를 작성 후 서울중기청 보고
-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포상대상 최종 확정
- * 최종 포상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6 심사기준

○ (심사기준)

구 분	평가항목	배점
	(매출액) 구간별 매출액	10
	(고용) 구간별 고용인원	10
	(수출/투자) 구간별 수출 및 투자액 (택1)	5
1인창조	(지재권) 구간별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건수	5
입주기업	(혁신성)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	15
	(타당성) 수익모델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15
	(시장성) 시장 진출 및 확대 가능성	20
	(수익성) 수익창출 가능성	20
	100	
40141477104	입주기업 지원실적	35
1인창조기업	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담당 실적 및 성과	35
지원센터 전문인력	창전문성 및 경력	10
	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실적	20
	100	

- * 수출 및 투자유치 금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음.
- **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건은 등록 1건으로 인정
- *** 정성지표의 배점은 최대점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배점 가능함.

7 공적심의위원회

- **(일시)** 2022년 10월 19일(수), 14:00~17:00(예정)
- o (방법)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심의
- ㅇ (심의위원회) 분야별 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

8 추진일정

○ (향후 일정)



*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[붙임 1]

정부포상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

1. 포상기준

가.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5 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단체 포함)에게 수여
 - * 단체의 경우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며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

나. 재포상 금지기간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
- 정부포상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
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- 단체 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,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: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(다만, 퇴직자는 퇴직일자)

2. 포상추천 제한

가.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나. 형사처분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 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*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, 개인 정보제공(활용) 동의서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

다.『상훈법』 제8조 및 『정부 표창 규정』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- 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- 라.『산업안전보건법』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 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

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-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 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*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(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「금 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
 - 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 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마. 『공정거래관련법』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) 및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바.『근로기준법』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○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
 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
 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사. 추천일 당시 『국세기본법』, 『관세법』 또는 『지방세징수법』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 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아.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○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 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<포상추천제한 조회기관>

- 범죄·수사경력 :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(☎ 02 · 3150 · 1960~61)
 ※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함
- 산업재해 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 202 7693)
- 불공정행위 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200 4127)
- 임금체불주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 202 7537)

[붙임 2] 선정자 요청 예정

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

■ 포상 후보자

성 명		
소속 (주소)	직위(급)	

-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- 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- ※ 특히, 아래의 "신고의무 사항"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「상훈법」제8조 제1호의 "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"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■ 신고의무사항

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- ※「상훈법」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2. .

성명

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,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
- 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 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- 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서훈기록부는 영구,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,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,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

<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